



- ※ 면적합산 시 소수점 4자리 이하에 대해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금액은 발코니 확장 제외 금액입니다. ※ 평형 환산방법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택형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주택형	84.9749	74.9311B	59.9362
약식표기	84	74B	59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은 약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 사양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등)비용이 미 포함 되어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본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 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층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하여야 함.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및 확정측량결과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고,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없음.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후 견본주택에서 별도 안내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세부적인 대출 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및 은행창구 등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입력한(또는 주택공급신청서 상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음.
-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순위 포함)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음.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의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외 지역외 거주하고 있더라도 당해지역 거주자로 봄.

II.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세대수

구 분	2 단지				
	일반특별공급(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10%)	신혼부부 특별공급(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3%)	합계
주택형(㎡)					
84	14	14	14	4	46
74B	6	6	6	1	19
59	3	3	3	1	10
합 계	23	23	23	6	75

1) 공통사항

- 신청 일시 및 장소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일시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사 견본주택 방문하여 신청

구 분	신청일시	당첨자 선정 및 공고일시	추첨 및 당첨자발표 장소	동·호추첨
①일반 특별공급	2016. 04. 12.(화) 10:00~14:00	2016. 04. 12.(화) 16:00	진영 한림폴에버 견본주택	2016. 04. 21.(목)
②다자녀가구 특별공급				
③신혼부부 특별공급				
④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과다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이 다소 지연 및 변경될 수 있음.
- ※ 특별공급 당첨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공통자격

- 특별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세대주에 한정)**으로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1세대 1인)만 주택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무주택여부확인대상자

가. 세대주 신청 시 :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나. 세대원 신청 시 : 세대주 및 청약신청자(세대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단,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제35조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한다.(국가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인 철거 주택소유자 등)

-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단,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전환 가능)
-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해당구간의 금액이 있으면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 함.
- 사업주체(시행자)는 특별공급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함.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일에 특별공급 동·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순으로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 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하고,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 및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분양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할 수 없음.

2) 일반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는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유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2호부터 제24호까지, 제26호에 해당되는 자

- 국외에서 1년 이상 취업한 근로자 중 귀국일부터 2년 이내인 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인정서류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하여야 함.**[미 신청 시 당첨자선정 및 계약불가]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은 추첨에 의한.
  - ※ 공급수량 이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김해시)거주 신청자가 우선함.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민법상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자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4.07 이전부터 계속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확인필요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 재혼한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적용 /
-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6) : 입주자 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가 생략되어 발급될 수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4)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재혼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신혼부부 주택의 거주지역 요건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4.07 이전부터 계속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선정방법

-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나)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단, 재혼의 경우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충족함.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함.
  - 나)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다)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소득기준

-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여야 함.(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전년도(2015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 분	201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고시)		
	3인 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16,665원 이하	5,393,154원 이하	5,475,4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779,998원 이하	6,471,785원 이하	6,570,484원 이하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신청. 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수대로 가구원으로 산정.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의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더불어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 19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이라 함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상의 총급여액,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6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은 2010년부터 통계자료를 작성, 발표하지 않는 관계로 5인 월평균 소득 기준 적용.

• 소득입증서류

구 분	세 부 내 역			
소득입증 서류목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당사건본주택비치)	* 접수장소	

5)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4.07 이전부터 계속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로 봄.]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함.
-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가점제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식에 의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 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세대주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인감도장	
	0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운전면허증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하여 발급요망	
	0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포함 하여 발급요망	
	0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비람)	
	0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일반특별공급	0		해당 기관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장애인특별공급의 경우 지지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복지카드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07)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0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6.04.07)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확인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0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일자 확인 필요 시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접수 장소에 비치	
	0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되어야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제출가능	
	0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표1 소득증빙서류참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 시는 제출 생략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일반공급**

1)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2015.04.07 이전부터 계속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김해시 또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예치금액이 같거나 작은 지역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청약저축 미 실시지역 거주자는 1순위 신청이 불가하며 2순위는 청약가능.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 전산검색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단,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사실 삭제 및 청약통장 부활이 허용될 수 있으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자격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 민영주택 공급 시 청약예금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김해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 기준 주택형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자는 1순위 청약 가능.

2)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청자격	거주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공통	-85㎡이하 : 가정제 40% / 추첨제 60% -85㎡초과 : 추첨제 100%	김해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16.04.14. (목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은행 청약통장가입자 www.ap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li> <li>•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홈페이지)</li> <li>• 접수시간: 08:00 ~ 17:30</li> </ul>	일시: 2016.04.21.(목) 장소: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 (http://jinyeong.fulllever.c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당첨자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로는 착오 가능성으로 인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 하는 자</li> <li>•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li> <li>•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할 주택형의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신청할 주택형의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 청약신청 시 모두 가정제로 청약 접수함.</li> </ul>				
	2순위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접수 중이라도 접수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신청 시 인터넷청약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가정제 개요(가정항목,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청약가정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시간 :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고, 2순위는 청약신청금 출금계좌가 있는 은행에서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구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용면적 85㎡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해당구간의 지역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3) 청약 가정제 적용안내

- 2007.09.01일 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정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정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정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정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등 총점 84점
- 청약가정제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본인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4)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구분	가 점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 택 기 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가입자본인)	5	4 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 명	10	5 명	30	
		2 명	15	6 명	35	
		3 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 점	84점 만점기준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세대원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청약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유주택자이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5) 청약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④ ①부터 ③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①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②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③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부여 됨.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 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8)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 /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의 특별공급 시에는 적용 제외)시 적용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동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동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동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순위(동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동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청약신청 접수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 공통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당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태, 청약순위 별로 청약접수 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은 가정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정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 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 주택형태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40%를 가정제, 60%를 추첨제로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 전체를 추첨제로 청약신청자에게 공급함.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신 분 - 2순위 : 청약신청금(상심민원) 거래계좌를 보유한 분(16개 주택청약 참가은행만 해당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APT청약신청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주택청약⇨인터넷청약

- 인터넷 청약절차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 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통장 취급은행 비치)</li> <li>• 청약통장(1순위자에 한함)</li> <li>•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li> <li>• 청약신청금[제2순위 신청자에 한함]</li> <li>•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li>•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li> </ul>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li>①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 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②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③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li> <li>④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li> </ul>

-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2005.07.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2순위 청약신청금

대상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주택형	상십만원	은행창구(방문) 청약접수 시	청약지역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인터넷 청약접수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 본인 계좌에서 자동 인출(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30만원 이상 유지)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16.04.22)이후 평일 09:00~16:00(토·일·공휴일 제외)
- 환불방법 ① 인터넷 청약신청자 -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환불됨.  
② 은행 창구 청약자 -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직접 환불(단, 자동 환불 신청한 분은 당첨자 발표 익일 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 구비서류
  - 본인·배우자 환불 시: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 당시 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제3자 대리 환불 시: 상기 서류 외에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청약 신청금 환불 위임용)1부, 인감도장, 위임장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2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당사건본주택에서는 당첨자만을 선정함.(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일회성에 당사 건본주택에서 공개 추첨함.) -동·호수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일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전산 추첨함.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고 미달 물량 발생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일반공급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거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85㎡이하 : 가점제 40%, 추첨제 60% ①청약자 모두 가점제로 청약 ②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2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 당사 건본주택을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 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 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당사로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게 한하여 별도 통보할 예정임.
- 예비당첨자 중 최초 동·호수 배정 주청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발표 이용안내

구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의 은행에서 청약 접수한 자에 한함)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자에 한함)	
인터넷	이용방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당첨사실조회→주택별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주택청약→당첨확인→주택별 조회
	이용기간	2016. 04. 21 ~ 2016. 04. 30 (10 일간)	
전화 (ARS)	이용방법	금융결제원 (1369) [ 서비스코드 : 5# ]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 서비스코드 : 9→1→3 ]
	이용기간	2016. 04. 21 ~ 2016. 04. 30 (10 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6. 04. 21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대상	계약 기간	접수 기간	계약 장소
정당 당첨자	2016년 4월 26일(화)~2016년 4월 28일(목) (3일간)	10:00~16:00	진영 한림폴리에버 건본주택
예비 당첨자	추후 통보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 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222222227	한림건설(주), 가현

※ 분양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현금수납 불가)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홍길동 101-101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람.(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사항
정당 당첨자 (본인 계약체결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li> <li>계약금 입금 확인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li> <li>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li> <li>-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li> <li>-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하며 직계존속초본 1통)</li> <li>-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li> <li>-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li> </ul> </li> </ul>
부적격 통보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li> <li>-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li> </ul>
제 3자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건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li> </ul> </li> </ul>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 시 1순위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이 사실과 다른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이후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도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와 함께 계약이 취소됨.)
- 부적격 당첨자중 당사가 지정한 기간이내에 고의성 없이 신청자격을 착오로 잘못 입력(기재)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음.(단,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다른 주택 청약 및 당첨이 불가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및 공급계약서를 준용함.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입주지정개시일 약 1개월 전에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임.(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융자 알선할 예정임.(관련 정책 등의 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 1회~6회 무이자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중도금 대출은행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에서 알선하는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인지대, 각종 서류, 증명서발급비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 부담임.
-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시에는 납부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지연납부 시 연체료가 가산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변화, 개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중도금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경우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 하에 고지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지연납부 시 연체료가 가산됨.)
-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납부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 설치

■ 입주예정일 : 2018년 6월 예정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수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수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함.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강마루, 타일, 거결반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도장
천정	천정지(초배지포함),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반자동림(몰딩포함)	천정을 위 석고보드 마감,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문	목재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발코니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디지털도어록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정재(천정틀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헨, 욕실바닥 및 벽타일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일체(가스쿡탑, 주방액정TV, 렌지후드 등)	소방검사 관련 후드 및 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장, 파우더장, 반침장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등

• 마이너스옵션 금액 [2단지]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84	74B	59
기본선택(마이너스옵션)	25,143,775	21,874,070	17,672,913
※상기 금액은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 마이너스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 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잔금 납부 후 시공이 가능함.
- 상기 마이너스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옵션은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마이너스옵션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자재수급,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체결 이후에는 마이너스옵션 신청이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입주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법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공사,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회차별 공급대금 납입비용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옵션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84	74B	59
발코니 확장금액	8,200,000	7,200,000	6,000,000
계약금(계약 시)	820,000	720,000	600,000
중도금(2017.02.25.)	1,640,000	1,440,000	1,200,000
잔 금(입주 시)	5,740,000	5,040,000	4,200,000

- 견본주택은 상기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 및 시공되었으며, 별도품목 내역은 견본주택 및 안내문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발코니 확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으로,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임.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계약 가능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단열재 및 난방시공이 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 별도품목 계약을 하지 않은 세대는 입주 전 외부창호 설치 후 입주하여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음.(단, 사용검사 및 잔금 납부이후 설치 가능)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일부 선통통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통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 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2222222228	한림건설(주), 가현

- 발코니확장대금은 상기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추가 선택품목)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타입)	설치위치	설치대수 (실외기 +실내기)	금 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7.02.25.)	잔 금 (입주 시)
84	거실+침실1	1 + 2	3,150,000	315,000	630,000	2,205,000
	거실+침실1+침실2	1 + 3	4,200,000	420,000	840,000	2,940,000
	전 실	1 + 4	5,450,000	545,000	1,090,000	3,815,000
74B	거실+침실1	1 + 2	3,100,000	310,000	620,000	2,170,000
	거실+침실1+침실2	1 + 3	4,150,000	415,000	830,000	2,905,000
	전 실	1 + 4	5,400,000	540,000	1,080,000	3,780,000
59	거실+침실1	1 + 2	3,050,000	305,000	610,000	2,135,000
	거실+침실1+침실2	1 + 3	4,100,000	410,000	820,000	2,870,000
	전 실	1 + 4	5,350,000	535,000	1,070,000	3,745,000

- 유의사항
  - 상기 실별 천장형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차이로 인해 금액차이가 발생함.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공사 계약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
  - 추가 선택품목 계약 후 계약 시 안내받은 제품이 단종될 경우 동질,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품(거실, 안방)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 분	금융 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시스템에어컨 계약금, 중도금, 잔금	경남은행	22222222229	한림건설(주), 가현

- 시스템 에어컨 금액은 상기계좌로만 납부해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며, 계약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유의 사항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음.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가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 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 등(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청약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사항을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도 거주지역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을 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가 건설되는 대지는 택지개발지구 등과 달리 다수의 필지로 이루어져 있어 향후 확정측량결과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지구계의 변경 및 면적 증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계획변경 시 계약자는 당연히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확정측량결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허용범위 내의 변동은 상호 정산하지 않으며 허용 범위를 벗어난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증감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사업지 인근 공동주택 택지지구의 건설 등 공사로 인해 소음 및 분진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부지 북측에 김해대교가 인접되어 있어 도로교통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김해대교 북측방면 진영공설운동장 등으로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북측에 과수원 및 논작지가 인접되어 있어 농약살포 및 퇴비 등으로 주거환경 저해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아파트 진출입 정문까지 일부만 개설되며,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번호, 외부마감자재의 종류 및 색상,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각종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주택형별 면적(㎡)×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3.3058】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 카탈로그,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광역위지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단지모형, 각 주택형별 입체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분양모형 및 Computer Graphics(조감도, 위지도, 투시도 등)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 및 배수시설, 저수조 등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방식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운동기구,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홍보용 자료에 표현된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발코니부위는 드레인 및 선풍통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발코니 비확장세대)의 내부와 발코니 사이에는 PVC 창호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조영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발코니 확장형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거실, 주방, 침실 등에 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인하여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 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에서 임의로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견본주택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입주 후 1년)할 예정.
- 단지 주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으로 인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배치 상 세대 상호간에 향이나 층에 따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운동시설,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관리동 등의 설치로 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동 등기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공간이므로 전용화 또는 사유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사항임.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조환경 검토결과 알림
  - 분석방법 : 통상 법원 감정 시 사용되는 동지일 기준의 수인한도 일조기준
  - 검토기준 : 동지일 기준 08:00~16:00까지 8시간 중 합산일조 4시간 이상, 연속일조 2시간 이상 충족여부
  - 미 충족세대 : 201동 전 세대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및 도로, 소음, 일조, 조망, 진입로, 사생활침해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아파트 단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어 공동주택단지와 별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상 및 지하주차장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출까지 동선이 다소 길어 이용에 불편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천정에 설치된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지하주차장 등의 환기를 위해 지상에 노출된 환기시설물은 건축물 특성상 필요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천연대리석 시공부위는 원석을 가공하여 사용하므로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공극, 스크래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분양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변경)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함.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분양계약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업소 등)는 당사와 무관함.
- 사업지 인근의 공공시설물의 개발, 건립 등은 관계기관의 사정 및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 아파트의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교 학생은 인근 김해대흥초등학교에 배치하기로 김해교육지원청과 협약 체결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등), 생활가전류(전자레인지, 냉장고, 밥솥, TV 등),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등은 연출용임.
- 분양계약체결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그림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계약품목 및 디스플레이 물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임.
- 단지 내 조경수 식재위치 및 세부식재계획, 보도포장,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입체적 단지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 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는 비닐계의 롬이 시공되고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싱크대 벽면과 세대내부 신발장 및 불박이장등 가구설치부위의 비 노출면(바닥, 벽, 천정)은 별도마감 없음.
- 외부마감재가 시공된 부분의 비노출부분은 별도의 마감재 시공이 되지 않음.
- 본 공사 시 옥조의 뒷면과 바닥, 옥실장 뒷면, 옥실 천정상부는 타일취부를 하지 않음.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고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으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인·허가 협의 조건에 따라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해당부지는 영구임대 될 예정임.
- 단지배치 상 기계실, 전기실, 지하주차장 급·배기구,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인접세대는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음.
- 세대내 환기시스템 설치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김해시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구 분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에 면한 창 의 기밀성능 1등급 이상 제품 적용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고효율 조명기기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 적용
고효율기 자재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기준에 만족하는 제품 적용 - 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 대기전력 자동차단센트(거실, 침실, 주방)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세대 내 현관에 설치	절수설비	적용	-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412016-101-0000600 호	34,575,338,8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남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종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종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어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원으로 개인정보 요청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2단지]

구 분	회 사 명	금 액 (원, VAT포함)
건 축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644,696,800
전기·통신·소방	(주)유일방재엔지니어링	46,750,000

■ 사업주체 및 시공사 [2단지]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가현	한림건설(주)
주 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0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0
등록번호	384-19-00012	609-81-09485

- 견본주택 위치: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99-5 진영 한림풀에버 견본주택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다 및 착오가 있을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사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문의 : 055 - 312 - 0100**